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3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소영철, 신복자, 왕정순, 유정인,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한·신, 홍국표 의원(26명)

1. 제안이유

- 인구정책 수립과 관련해 정책의 주체인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논의하고 주체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재정지원 주체 측면에서 법인, 단체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설정된 조항을 대학, 기업, 유관단체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인구정책 시행에 있어 공로가 인정되는 주체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련하여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단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나. 기존 법인·단체로 규정된 항을 대학·기업·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인 세부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12조)
- 다. 인구정책 시행 관련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제7조의2(인구교육),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인구정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법인·단체”를 “대학·기업·유관단체”로, “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u>법인·단체</u>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u>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2조 (생 략)</p>	<p>제11조(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인구정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u>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u>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재정지원) ① ----- ----- <u>대학·기업·유관단체</u> ----- <u>행정적·재정적</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14조(포상) <u>시장은 인구정책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